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7431 |
| 의 뢰 인 | 박용갑 의원 |
| 회 답 일 | 2025. 2. 14. |
| 추계번호 | 25B0187 |

# 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4조<br>(항공・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) | 항공・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항공・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<br>※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함 | 의무규정 |
| 2 | 안 제6조<br>(위원회의 구성) |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상임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(제1항)<br>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함(제2항)<br>※ 비상임위원 위촉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함 | 의무규정 |
| 3 | 안 제33조<br>(위원회의 운영 등) |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・위원・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(제2항)<br>※ 재량규정인 수당 또는 여비 지급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 | 의무규정 |

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미첨부 근거 규정 |
|---|---|---|
| 1 | 안 제4조<br>(항공・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| 안 제6조<br>(위원회의 구성) | |
| 3 | 안 제33조<br>(위원회의 운영 등) | |

## 2. 상세 사유

❑ 항공・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(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6조제1항·제2항, 안 제33조제2항)

○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항공・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,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던 비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,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여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임

○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 1인(비상임), 상임위원 2인(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및 철도국장), 비상임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[1] 현행법 제16조[2]에 따라 사무국을 두고 있음

[표 1]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구성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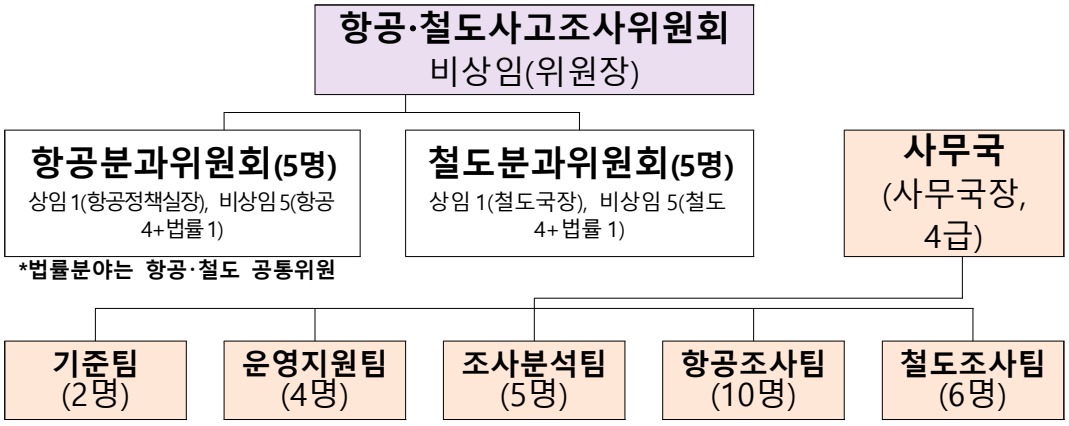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토교통부

1)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.
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
③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6조(직무)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는 「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제4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,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.
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.

2)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사무국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은 사무국장·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.
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.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개정안 중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변경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어, 현 시점에서는 위원 등의 소속 및 직급 변동 여부를 알 수 없으나, 현행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상임위원의 인원 및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그에 따라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」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겸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할 경우 상임위원 정수 및 직급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

[표 2] 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현행 규정

| |
|---|
|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.<br>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비상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<br>③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br>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46조(직무)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이 장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는 「항공·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<br>제4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,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.<br>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. |

자료: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검색

○ 다만, 현 시점에서는 향후 변경될 수 있는 상임위원의 인원 및 직급을 알 수 없고, 현행과 같이 현직 공무원이 겸직할지 여부 등 근무 형태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른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·관리비·공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○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여비 지급 의무화와 관련하여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현재 위원 등에게 안건검토수당,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 등[3]을 지급 중이어서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3) 안건검토수당(1건 20만원, 2건이상 40만원), 참석수당(15만원 + 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), 자문수당(1인당 20만원)

# 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Ⅳ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경제비용추계과 | 박인재 | 김신애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박인재 | 02-6788-4650 | powerreset@nabo.go.kr |

## [참고자료 1]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현황

### ❑ 위원회 구성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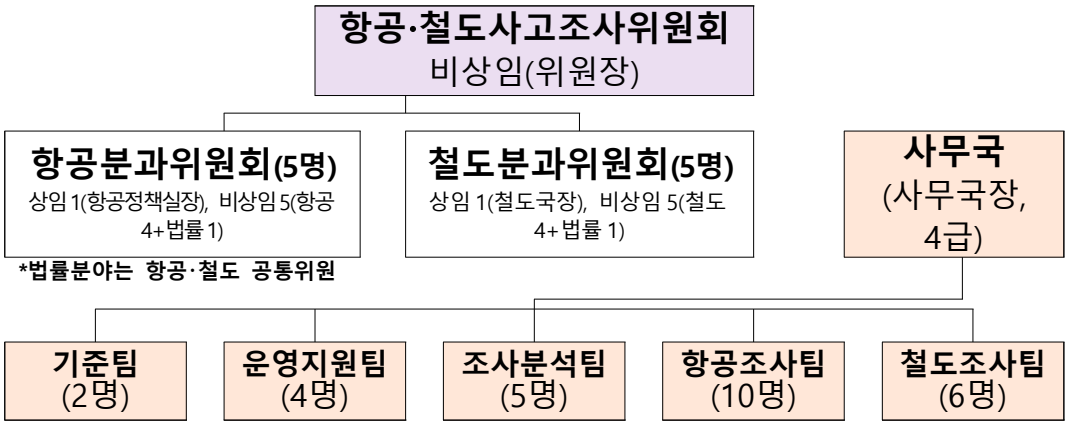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토교통부

### ❑ 사무국 구성현황

○ 정원 29명 / 현원 28명

| 계 | 일반직(11/12) | | | 전문임기제(사조조사관) | | 공무직 3명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4급 | 5급 | 6급 이하 | 가급 | 나급 | |
| 29/28<br>(정원/현원) | 1/1 | 5/6 | 5/5 | 3/3 | 12/10 | 3/3<br>(영어자문관,<br>청소원,<br>시설관리원) |

주: 조사관은 '전문임기제' 공무원으로 정원은 별도정원으로 확보, '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경력경쟁공개채용을 거쳐 임용(1년단위 계약, 사조위 사무국 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, 최대 5년)

자료: 국토교통부

### ❑ 위원회 사무국 소재지

○ 세종시 가름로 세종비지니스센터 A동 6층(민간 건물 임차 사용)

○ 위원회 사무국과 별도로 시험분석센터 및 잔해보관시설은 김포공항 내 국립항공박물관 맞은편, 서항청 토지 및 건물에 위치

## [참고자료 2] 위원회 사무국 '24년 운영경비 세부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세 목 | '24년도 예산 |
|---|---|---|
| 계 | 총 계 | 1,188 |
| 항공기사고조사및장비유지 | 소 계 | 823 |
| | 인건비(공무직) | 55 |
| | 운영비(수용비, 공공요금, 임차료) | 435.4 |
| | 여비(국내여비, 국외업무및교육여비) | 140.1 |
| | 업무추진비 | 2 |
| | 용역비(일반연구비) | 68 |
| | 민간이전(고용부담금) | 10 |
| | 기타유형자산(자산취득비) | 112 |
| 철도사고조사체계구축 | 소 계 | 171 |
| | 운영비(수용비, 공공요금, 임차료) | 81 |
| | 여비(국내여비, 국외업무및교육여비) | 40 |
| | 용역비(일반연구비) | 40 |
| | 기타유형자산(자산취득비) | 10 |
| 기본경비 | 소 계 | 13 |
| | 운영비(특근매식비, 기타운영비) | 9 |
| | 직책수행경비 | 4 |
| 기본경비(비총액) | 소 계 | 181 |
| | 운영비(일반수용비, 공공요금, 임차료) | 173.6 |
| | 여비(국내여비) | 2.1 |
| | 업무추진비 | 5.3 |

자료: 국토교통부